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」(식약처 고시) 일부개정 알림

- 1.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국제조화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'20.9.22자로 개정·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2.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,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>법령·자료〉제·개정고시 등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「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」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

수신자 본부(52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

주무관 서기관 김영주 의약품정책과장 <mark>전결 2020.</mark>9.22. **자규한** 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13167 (2020. 9. 2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07 팩스번호 043-719-2606 / yuriz8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